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권 강화〉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59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서류제출요구권 확대	4
2. 출석요구서 등의 전자문서를 통한 발송·송달	12
3. 증인 등의 온라인 출석 허용	17
4.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20
5. 증인 구인제도 도입	24
6. 벌칙 강화	3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이재관 · 김태년 · 김성환 · 박홍근 · 이정문
이성윤 · 김원이 · 이수진 · 이기현 · 소병훈 · 박용갑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7. 8.

3. 회 부 일 : 2024. 7. 9.

※ 의안번호 : 145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 국회 청문회 개최 실효성을 높이고, 증인의 증언 직접 청취로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음. 청문회 증인이 2번 연속 불출석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 결국 청문회는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로 진행되었음.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침해함.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임. 청문회 유명무실화에 대한 시민 분노가 컸던 이유임. 현재 취할 수 있는 고발 등 형사 처벌 규정은 사후 조치에 불과함.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불출석과 함께 위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음. 국회 청문회의 질적 제고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나.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안 제5조제6항).

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및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

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라. 청문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6조의2 신설 등).

마.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불출석 등의 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적으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위증 등의 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서류제출요구권 확대 (안 제2조)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 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u>따라야 한다.</u>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 ----- ----- ----- ----- ----- ----- ----- <u>-----따라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u>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이라 함) 제10조제4항¹⁾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2조²⁾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1) 「국감국조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를 받은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³⁾

[표-2]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증언·서류등 제출의무 예외 사유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
2.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 책임**과 관계된 증언, 감정 또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3.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⁴⁾에서 개인정보처리자⁵⁾는 일정

- 2)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 3) 법제처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으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해석함[국회가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14-0411].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⁶⁾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정보’⁷⁾와 ‘고유식별정보’⁸⁾ 및 ‘주민등록번호’는 그 처리⁹⁾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¹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7)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
 - 8)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9)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
 -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녀가 A대학교 대학원 휴학 시 제출한 병원진단서(민감정보)의 진위확인 및 인사검증을 위하여 A대학교가 해당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등 **관련 법령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청문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민감정보인 진단서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회에 해당**

[표-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 등의 처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	주민등록번호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1.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¹²⁾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¹³⁾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령상 비밀·비공개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음.¹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음(「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04-050호).

11)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만, 관행적 동의 절차에 따른 오·남용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다른 고유식별정보보다 더욱 강화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1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시>

「병역법」 제11조의2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를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3)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성년후견등에 관한 기록사항) ① 성년후견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후견의 종류, 심판을 한 가정법원, 사건의 표시 및 재판 확정일
 2. 피성년후견인들의 성명, 성별,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한다)

[표-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1.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이와 같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실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¹⁵⁾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전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14)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에서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활동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음(최석림 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현안보고서 제10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7).

15)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활용에 있어서도 헌법 제17조16)에 따른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과 헌법 제37조제2항17)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그 수집 또는 보유만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개인정보로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¹⁸⁾

따라서, 국회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특별한 요건이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율할 경우 비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⁹⁾

둘째,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이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개별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개인정보보

16)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7)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8) 사상이나 신조에 관한 정보, 범죄나 전과사실, 병력 등과 같이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 내지 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활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결정).

19)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따른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요청을 받아 피의자 검거를 위해 ‘요양급여내역’(민감정보)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

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거부금지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 직접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5] 개별 법률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직접 규정한 입법사례

근거 법률	요구 목적	제출대상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5조의6)	○ 국정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 납세자의 과세정보(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공개회의에 제공)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등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인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
「변호사법」 (제89조의9)	○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한국투자공사법」 (제37조)	○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 불가)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 열람·복사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 외부 공개 불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헌법 제37조가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되어 기본권 제한 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고 해당 요구서는 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하되, 요구서의 송달방법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방법을 살펴보면, 송달은 도달주의 원리에 따라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²¹⁾을 원칙으로 하되, 교부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²²⁾을 실시하고,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송달’²³⁾을 할 수 있음.

개정안은 증인 등 출석요구서 등의 송달 시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민사소송법」상 송달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석요구서 등의 미송달을 이유로 한 증인 등의 불출석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회의 증인 등 출석요구 제도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1)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22)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23)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3²⁴⁾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규정(2018. 4. 17. 개정·시행)하고 있음.²⁵⁾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의 송달방법으로는 출석요구서 등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보충적이고 최종적인 송달방법임.

공시송달은 ① 증인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②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③ 출석요구서 등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④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① 국회게시판 게시, ② 관보·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이루어짐.

24)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3(공시송달) ① 제5조제1항의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1. 증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소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3.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4.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회게시판 게시

2. 관보·국회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공시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증인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5) 개정 전 「국회증언감정법」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사항만 준용하고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석요구서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일부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기 위하여 주소지를 피해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와 같이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2018년 개정된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효율성을 높였음.

이와 같이 현행법에서 이미 「민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의 송달방법으로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충적으로 공시송달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송달방법에 있어서도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²⁶⁾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현행법상의 공시송달제도에 더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할 송달방법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일반적인 송달방법의 하나로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라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²⁷⁾ 「행정심판법」,²⁸⁾ 「국세기본법」²⁹⁾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전자송달(전

26) 현재 국회홈페이지(위원회-공시송달 메뉴)에 게시함으로써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있음.

2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 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8) 「행정심판법」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우편 등)의 근거를 마련하되, 당사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전제로 전자송달 방식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송달의 적용범위, 요건,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을 ‘수신’ 시로 정하고 있는데, ‘수신’이 해당 이메일 등 전자문서가 증인 등이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³⁰⁾된 때를 의미하는지, 증인 등이 해당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확인’³¹⁾한 때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9)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0) 입법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 또는 “저장”된 때나 관련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31) 입법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에서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3. 증인 등의 온라인 출석 허용 (안 제5조제9항)

개정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7]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⑧ (생 략) <u><신 설></u>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⑧ (현행 및 개정안과 같음) ⑨ <u>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출석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 및 진술한 것으로 본다.</u>

「국회법」 제129조³²⁾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

32) 「국회법」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의무 및 선서의무(참고인 제외)를 지는데, 증인이 출석요구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감정인이 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표-8]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의무 및 형사처벌 여부

구 분	증인·감정인	참고인
출석의무(제2조)	○	○
선서의무(제7조)	○	×
불출석 등의 죄(제12조)	○	×
국회모욕의 죄(제13조)	○(감정인 제외)	×
위증 등의 죄(제14조)	○	×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제4항³³⁾에 따르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할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출석할 장소의 위치(회의장, 국정감사·조사 현장, 기타 장소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출석 방식(직접 출석, 원격 출석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음.

이에 개정안은 출석의무를 지고 불출석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인 등이 신체적·물리적·공간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33)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증인 등의 출석 편의성을 높이고 공간에 제약 없는 증언·감정·진술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원격출석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선서·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원격출석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격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불출석죄 등 벌칙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불필요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³⁴⁾

현재 증인 등의 원격출석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원격지의 증인을 영상으로 출석시켜 증인 선서 후 국정감사를 실시한 사례³⁵⁾가 다수 존재하므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원격출석한 증인 등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회의장 등에 직접 출석시켜 신문하는 것에 비하여 현장감과 집중도가 떨어지고 통신 상태에 따라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³⁶⁾

34) <유사 입법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서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35) 2005년 9월 23일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2006년 10월 19일 및 2007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16년 10월 7일 및 2017년 10월 26일 정부위원회 국정감사, 2020년 10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2021년 10월 21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등(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4, pp.859~863)

36) 참고로,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장에 영상회의 운영

4.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안 제6조제1항)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이하 “동행명령”이라 함)하는 제도를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표-9] 개정안 동행명령 적용대상 범위

동행명령제도 적용대상	현행법	개정안
국정감사·조사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청문회 포함)	○	○
청문회	×	○

[표-10]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u>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 <u>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회</u>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 및 개정안과 같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영상회의시스템이나 영상회의실이 아니더라도 일반 인터넷을 통한 영상회의 참여가 가능함. 다만, 영상회의에 참여하는 상대방의 통신 상태에 따라 영상 또는 음성 고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현행 「국회법」, 「국감국조법」 및 「인사청문회법」 상 위원회(본회의·소위원회 및 반제외)에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국정감사·조사(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청문회 포함), ② 안전심의(안전심의를 위한 청문회 포함), ③ 청문회³⁷⁾ 및 ④ 인사청문회³⁸⁾가 있음.

그 중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음.³⁹⁾

37)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전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129조(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감국조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38) 「인사청문회법」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19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으므로(국회사무처, 「국회선례집」, 2024, p.410),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에 관한 본 검토보고에서는 제외함.

대별	위원회	불출석 증인		의결일	비고
제18대	국무총리(김태호)임명 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	○○○	전 맨하튼 강서식당 사장	2010. 8. 25.	동행명령 거부
		○○○	전 태광실업 회장		
		○○○	전 김해시장		
	법제사범(검찰총장후보자 한상대 인사청문회)	○○○	행당동 토지 매수인	2011. 8. 4.	집행보류

39) 「국회증인감정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구인⁴⁰⁾과 달리 증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집행되지만,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⁴¹⁾

그런데, 현행법상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 국정감사·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출석요구가 가능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 출석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현재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40)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41) 동행명령 의결 현황(제20대 ~ 제21대)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국정감사	-	1	2	2	1	2	8	3	19
국정조사	66	-	-	-	-	-	5	2	73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 청문회 증인까지 동행명령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면 해당 증인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게 되므로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증인과 청문회 증인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현행 동행명령제도는 제9차 헌법개정으로 국정감사권이 부활되어 「국감국조법」이 제정(1988. 8. 5. 제정·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당시 동행명령제도와 함께 도입된 검증제도도 국정감사·조사에만 인정되었으나 2003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하여 안전심의의 경우에도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⁴²⁾

42)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전심의 등을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안전심의의 경우에도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밝히고 있음. 참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검증 관련 개정 전후 비교(2003. 2. 4.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5. 증인 구인제도 도입 (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개정안은 국정감사·조사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그 의결로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⁴³⁾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② (생략)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①·② (현행 및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u>처벌된다</u> 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해당 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 ----- ----- ----- ----- ----- <u>처벌 또는 구인될 수 있다</u> ----- ----- -----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6조의2(증인의 구인) 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u>

현행	개정안 ⁴³⁾
	<u>또는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하며, 구인장은 위원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한다. 이 경우 집행명령을 받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항의 보조를 요구받은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는 구인장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집행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⑤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3) 개정안 제6조제1항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6조의2제1항 중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는 약칭된 용어인 ‘위원회’로 수정하여야 함. 참고로, 개정안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제6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제12조제1항),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구속의 촉탁)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을 회피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제13조제2항).

그런데, 동행명령은 증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임의동행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는 없어 증인의 출석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⁴⁴⁾ 사후적인 형사처벌 가능성을 통하여 증인의 출석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데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비하여, 「형사소송법」 제152조⁴⁵⁾ 및 「민사소송법」 제312조⁴⁶⁾는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증인 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할 수 있는데, 그 세부적인 구인 절차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절차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함.

이에 개정안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구인 절차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하며, 구인장은 위원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하도록

44)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p.807

45)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46) 「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록 규정함으로써, 증인의 출석을 보다 강하게 강제하여 국회의 국정감사·조사 및 청문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국회 증인 강제구인제도는 재판절차상의 증인이 아닌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조사나 청문회를 위한 증인에 대하여 강제구인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강제구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⁴⁷⁾⁴⁸⁾

현행법상 증인 동행명령제도는 제13대국회에서 도입된 것인데, 당초 증인 구인제도(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통한 증인 구인)가 포함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⁴⁹⁾이 본회의에서 의결(1988. 7. 9.)되었으나 대

47) 제20대국회 제358회국회(임시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2018. 3. 21.)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증인 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백혜련·이종걸·박인숙의원안)을 논의하였는데, ① 국회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기본권 침해(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② 제13대국회(1988. 7.)에서 의결된 증인 구인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 등이 있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해당 개정안들은 임기만료폐기되었음.

48) 국회 증인 강제구인제도 도입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헌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회가 법관의 영장발부 없이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지만, 국회가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구인은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국회 증인 강제구인제도 도입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 2023. 1. 16.)

4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1988. 7. 국회법개정특별위원장)

제6조(증인의 구인) ①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증인을 일정한 장소에 동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구인은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하며, 구인장의 집행은 증인의 재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증인이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군검찰관)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행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사무보조자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명령을 받은 사무보조자는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국회사무처소속 경위의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표결한 결과 부결(1988. 7. 18.)되어 최종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현행과 같은 증인 동행명령제도가 포함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1988. 7. 23.) 및 대통령의 공포(1988. 8. 5.)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임.

당시 재의요구 이유는 ① 증인 구인제도는 사법절차상 사실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헌법은 사법부 외 다른 기관에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고, ② 피의자가 아닌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것은 입법활동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치며,

③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불출석 시 처벌규정만으로도 증인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고, ④ 법관이 국회의 요구대로 구인장을 무조건 발부하는 상황 또는 그 반대로 국회의 요구를 기각하여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는 상황 모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⁵⁰⁾

따라서, 국회 증인에 대한 구인제도 도입 여부는, 증인 출석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및 국정감사·조사 등 국회 기능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증인의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기본

⑤ 제4항의 보조를 요구받은 국회사무처소속 경위는 구인장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집행은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⑦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중 증인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0) 제13대국회 제14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88. 7. 18.) 당시 국무총리 및 법무부장관이 본회의에서 설명한 재의요구 이유를 요약함.

권 침해의 정도를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주요국 의회의 증인 구인제도 사례를 보면, 미국·일본·영국 의회의 경우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제재가 가능하나 강제구인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반면, 독일 의회의 경우 특정 안전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서는 비용부담, 벌금형 부과 및 강제구인을 할 수 있음.⁵¹⁾

51) 「국회 증인 강제구인제도 도입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회답, 2023. 1. 16.

6. 벌칙 강화 (안 제12조 및 제14조)

개정안은 ① 불출석 등의 죄(제12조) 및 위증 등의 죄(제14조)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 요구 받은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12]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및 개정안상 벌칙규정

구 분	구성요건	법정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⁵²⁾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개정)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한 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 요구 받은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⁵³⁾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⁵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개정)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52)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53)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

[표-1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 ----- ----- ----- ----- ~~5년~~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u>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 ----- ----- ----- ~~3년~~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54) 「국회증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불출석 등의 죄’ 및 ‘위증 등의 죄’의 법정형 상향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등의 죄’(제12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증 등의 죄’(제14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불출석 등의 죄’의 징역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위증 등의 죄’의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증인의 출석을 제고하고 위증을 방지하는 등 국정감사·조사 등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불출석 등의 죄’(불출석,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보고·서류제출 요구 거절 등)의 징역형을 ‘국회모욕의 죄’(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 거부)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불출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여, 불출석의 죄보다 동행명령 거부의 죄를 엄

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법상 법정형 체계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법정형 상향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14]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

구 분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동행명령 거부)
구 성 요 건	○ <u>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u> ○ <u>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u> ○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 <u>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u>	○ 증인이 <u>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u>
법 정 형	<u>3년 이하 징역 또는</u> <u>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개정) <u>5년 이하 징역 또는</u> <u>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u>	<u>5년 이하의 징역</u>

둘째,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위증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은 「형법」 55)상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모해위증죄(10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국회 위증죄의 하한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형법」상 위증죄에 비하여 형량이 더욱 과중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양태 및 죄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유형에 상응하는 적정한 법정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55)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표-15] 「국회증언감정법」 및 「형법」 상 위증의 죄

구 분	「증언감정법」 상 위증 등의 죄	「형법」 상 위증·모해위증의 죄
구성 요건	○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개정)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위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모해위증: 10년 이하의 징역

2) 거짓 자료 작성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⁵⁶⁾는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자료제출 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출 요구를 받은 서류를 고의로 파기·은닉한 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⁵⁷⁾

56)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7)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에 대한 제20대국회 논의[제349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17. 2. 21.)에서 거짓 보고 및 자료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할 경우, 정부가 국회의 고발을 의식하여 자료제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다만, 개정안은 허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및 서류를 파기·은닉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하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서는 국회모욕의 죄(동행명령 거부·회피) 및 위증의 죄(선서한 증인·감정인의 허위 진술·감정)에 한정하여 벌금형 없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

허위 보고를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및 서류를 파기·은닉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표-16] 「국회증언감정법」상 벌칙규정

구 분		구성요건	법정형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적 규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제13조①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형만 규정	제13조② 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제14조 위증 등의 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문 의 처
02)6788-5017